

# 위험기계, 기구 작업 안전

## 1. 위험기계, 기구 작업전 점검

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이해하고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기계·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위험기계, 기구별 방호장치 설치방법

### 가. 예초기

엔진으로 구동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 절단날을 이용하여 잡초, 잡목, 작은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초목을 자르는 예초기

- 방호장치 :

- ① 두께 2mm 이상일 것
- ② 절단날의 회전범위를 100분의 25(90°) 이상 방호할 수 있고, 절단날의 밑면에서 날접촉 예방장치의 끝단까지의 거리가 3mm 이상 구조로써 조작자 방향에 설치
- ③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

- 설치방법 :

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사용 중 털락, 이완되지 않도록 지름 6mm 이상 볼트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샤프트 튜브에 견고하게 부착

### 나. 원심기

원심력을 이용하여 액체 속의 고체 입자를 분리하거나 비중이 서로 다른 혼합액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 되는 원심기

- 방호장치 :

- ① 회전통에 설치되는 덮개는 내부 물질이 비산되어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변형,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일 것

- ② 개방 시 회전운동 정지되며, 덮개 닫은 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별도 조작에 의해 회전통이 작동되도록 회로를 구성

- 설치방법 :

- ①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작동 중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
- ② 작동 중 기계의 진동에 의한 이탈, 이완 위험이 없도록 체결볼트에는 와셔 등 이용하여 풀림방지 조치를 할 것
- ③ 급정지로 인하여 기계에 파손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순차정지회로를 구성하는 등 조치를 할 것

### 다. 공기압축기

동력에 의해 구동되고 아래에 해당되는 공기 압축기에 적용

- ☞ 토출압력 0.2MPa 이상 몸통 내경이 200mm 이상이거나 그 길이가 1,000mm 이상인 것
- ☞ 토출압력이 0.2MPa 이상으로써 토출량이 분당 1m<sup>3</sup> 이상인 것

- 방호장치 :

- ① 공기 토출구의 차단밸브를 닫아도 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구조의 언로드밸브
- ② 안전인증(KCs)을 받은 안전밸브 및 내후성이 좋고 장기간 정지하여도 밸브 시트에 접착되지 않을 것

- 설치방법 :

- ① 언로드밸브는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응축수 등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
- ② 안전밸브의 조정너트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
- ③ 설정압력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고, 작동 압력은 설정압력치의 ±5% 이내 일 것

- ④ 설정압력 등이 포함된 표지를 식별이 쉬운 곳에  
견고하게 부착할 것

#### **라. 금속절단기**

동력으로 작동되는 톱날 이용하여 냉간금속을 절단하는 기계

- **방호장치 :**

- ① 금속절단기의 톱날부분은 고정식, 조절식 또는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
- ② 조절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가공재 크기에 따라 절단날의 노출정도를 조절 구조
- ③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개방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

- **설치방법 :**

- ① 작업부분 제외한 톱날 전체 뒷을 것
- ②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
- ③ 톱날,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
- ④ 둑근 톱날 경우 회전날의 뒤, 옆,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 차단할 수 있을 것

#### **마. 지게차**

포크, 램(ram)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(mast)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기계차에 적용

- **방호장치 :**

-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(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)에 해당하는 등분포정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설치
-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(backrest)를 설치
- ③ 전조등, 후미등 및 안전벨트를 설치

- **설치방법 :**

- ① 헤드가드는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이며,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 가드 상부틀 아래면까지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일 것
- ②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 높이는 2미터 이상일 것
- ③ 백레스트는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,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
- ④ 전조등 및 후미등은 좌우에 1개씩 설치 하고,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

#### **바. 포장기계(진공포장기, 랩핑기)**

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

- **방호장치 :**

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의 다음 각 부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①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
- ②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위
- ③ 포장 릴(릴 풀림장치 포함) 주변
- ④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주변
- ⑤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

- **설치방법 :**

- ①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될 것
- ② 공구를 사용하여야 해체할 수 있을 것
- ③ 연동장치는 방호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기동 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될 것
- ④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☺

# 가스누출 감지, 경보기 작업 안전

## 1. 가스누출 감지, 경보기 점검과 관리

폭발·화재 등 순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는 가스 사고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 및 점검 사항을 이해하고 점검한다.

## 2. 용어의 정의

### 가. 가스

기체물질을 통틀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. 가스는 연료로서 우수한 장점이 있는 반면 폭발, 화재, 질식사고 등의 위험 존재 한다. 분류는 상태(압축·액화·용해), 연소성(가연성·조연성·반응성), 독성에 의한 기준 등으로 분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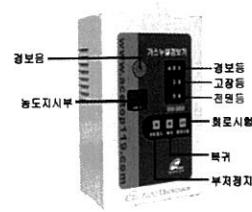
### 나. 가스누출감지경보기

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,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. 가스누출 감지센서에는 접촉연소식 가스센서, SnO<sub>2</sub>형 가스 센서, 산화철형 가스 센서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. 선택성이 좋고 신뢰성 높은 가스누설 경보기가 요망되고 있다.

## 3. 가스누출 감지, 경보기 선정기준

### 가. 가스의 특성 고려

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 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.



### 나. 독성인 경우

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 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.

## 4. 설치 장소 및 설치 위치

### 가. 설치장소

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건축물 내·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, 밸브, 반응기, 배관 연결 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
- ②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
- ③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
- ④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, 배전반실, 제어실 등
- ⑤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

### 나. 설치위치

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①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 감지, 경보기는 풍향,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.
- ②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 감지, 경보기는

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하부에,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 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③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# 5. 경보설정치 및 성능

### 가. 가연성 가스 설정치

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.

### 나. 독성 가스 설정치

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.

### 다. 정밀도

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±25퍼센트 이하,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±3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.

### 라. 성능

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.

- 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, 독성 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 연기, 기계세척유가스, 등유의 증발가스, 배기가스,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.
-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 발신 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.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. 다만, 암모니아,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.

③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±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.

- ④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,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(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)이어야 한다.

⑤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,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.

## 6. 가스누출 감지, 경보기의 구조와 보수

### 가. 구조

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.

- ①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.
- ②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 처리가 양호한 재료여야 한다.
- ③ 가연성가스(암모니아를 제외한다) 누출감지 경보기는 방폭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.
- ④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⑤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.

### 나. 보수

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여야 하며,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 ☺